

수원지방법원 2018. 10. 12 선고 2017가합23427 판결 [주식매매대금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8. 9. 7.

판결 선고 2018. 10. 12.

주 문

1. 별지 1, 2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.
2. 원고의 별지 2 목록 주식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5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의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. 주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612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9. 1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예비적으로,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의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120,234,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안경 프레임 등을 제조,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(이하 'C'라 한다)의 최대주주 및 투자자였던 사람이고, 피고는 2012. 1. 20.경부터 2017. 1. 31.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.

나. 원고는 2012. 4. 10. C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는데,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이 사건 계약

양도인 원고(이하 '갑'이라 한다)와 양수인 피고(이하 '을'이라 한다)는 아래와 같이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.

1. 계약

본 계약은 갑의 소유주식을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을에게 양도하기 위함이다.

2. 양도시점

갑의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는 시점은 대표이사 취임일부터 1년으로 한다.

3. 계약조건

본 계약의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(1) 발행회사 : 주식회사 C

(2) 양도 주식수 : 24,500주

(3) 양도 가액 : 갑의 최초 취득가액인 25,000원

(4) 총 인수가액 : 612,500,000원

5. 대금지급

을은 갑에게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을의 사정상 거래대금은

차후 주식으로 변제할 수도 있다. 단 이에 따른 모든 세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.

7.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,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.

(1) 위 계약은 계속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, 중도퇴사시 위 계약은 모두 무효처리된다.

다.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. 9. 10. 원고 소유의 C 주식 24,500주가 피고에게 양도되었으나, 주식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.

라. 한편, 원고는 2013. 1. 7.경 피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D(이하 'D'이라 한다)을 설립하게 하기 위하여 C 직영대리점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10,000,000원을 지급하였고, 피고는 위 돈을 자본납입금으로 하여 2013. 1. 14. D를 설립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D의 주식 20,000주를 피고 명의로 보유하여 왔다.

마. 피고는 2017. 8. 15. C 이사직에서 사임하고, 같은 날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가. D의 주식 20,000주에 관하여 피고는 형식주주에 불과하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자본금을 부담한 원고이므로, 위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.

나.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,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612,500,000원의 지급을 구하고,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양도대상이 된 C의 주식 24,500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남아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한편,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하는 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 120,234,590원(= 매매대금 612,500,000원에 대하여 2013. 9. 10.부터 2017. 8. 14.까지 연 5%의 이율로 계산한 돈)의 지급을 함께 구한다.

3. 판단

가. D 주식 부분에 대한 판단

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C 직영대리점 계좌로 입금된 원고의 돈 10,000,000원을 자본납입금으로 하여 D를 설립하고 그 주식 20,000주를 피고 명의로 보유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당시

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주식을 무상취득하기 로 하였다거나 위 주식 보유 내지 정산과 관련한 별개의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등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, 둘 사이에 D의 주식 20,000주에 관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원고를 실질주주로, 피고를 형식주주로 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, 위 납입금이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라는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, 위 판단을 달리할 수는 없다.

결국 D 주식 20,000주에 대한 소유권은 실질주주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,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로서 피고를 상대로 D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며,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는바,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.

나. C 주식 부분에 대한 판단

(1)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. 9. 10. 원고 소유의 C 주식 24,500주가 피고에게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한편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계약 체결의 목적이 C의 경영정상화에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퇴사시 이 사건 계약이 무효 처리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, 2017. 8. 15. 피고가 C에서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,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피고에게 위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주식 매매대금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나, 계약효력의 상실에 따라 양도대상이 된 C 주식 24,500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회복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, 이 부분 확인 청구 또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가 세무조사를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것이고,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양도대상 주식 중 10%를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,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(2) 다만, 이 사건 계약이 위 특약에 따라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, 이 사건 계약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이상,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지급 청구는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

것인바, C 주식과 관련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중 위 이자 상당액의 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동빈, 판사 강성진, 판사 박민선

별지1

목 록

발행회사 : 주식회사 D

주식의 종류 : 보통주

1주당 액면가액 : 500원

주식수 : 20,000주

별지2

목 록

발행회사 : 주식회사 C

주식의 종류 : 보통주

1주당 액면가액 : 5,000원

주식수 : 24,500주

